

의안번호	제3032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5. . . (제 회)	

(재)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5. 11. 14.

# (재)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032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1. 14.  
제출자: 고성군수

## 1. 제안이유

가. (재)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보존·관리·활용 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: (재)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

나. 출연금액: 금170,000,000원(금일억칠천만원)

다. 출연목적: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보존·관리·활용사업 위탁운영

라. 출연내용

(단위: 천 원)

사업명	사업비	주요내용	비고
계	170,000	7개사업	
사무국 운영	114,000	직원보수, 수당, 자산취득비,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 등 사무국 운영	
세계유산 보존·관리 전문교육	3,000	관계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	
가야고분군 연구총서 발간	4,000	가야사 연구성과 공유 및 가치 공유 총서발간	
가야고분군 사진촬영 및 화보집 제작	21,000	가야고분군 사진촬영 및 화보집 제작을 문화유산 기록보존 및 교육홍보 활용	
미디어 매체 홍보	17,000	미디어 매체 홍보(방송매체 광고, 옥외 광고 등)	
가야고분군 가치확산 홍보물 제작	10,000	가야고분군 통합브랜드 개발 활용한 굿즈, 통합홍보물 제작	
예비비	1,000	당해예산의 1% 이내 편성	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2) 「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제7조

####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#### 다. 합의: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**불임****비용추계서****(재)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**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가. 관련 조문: 「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나. 비용발생 요인: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비 등 지원  
다. 소요예산: 170,000천 원(연간)

**2. 비용추계의 결과****가. 추계의 전제**

- 「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

**나. 추계의 결과**

(단위: 천 원)

구 분	1차 연도 (2026년)	2차 연도 (2027년)	3차 연도 (2028년)	4차 연도 (2029년)	5차 연도 (2030년)	총합계 (평균)
군비(분담금)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850,000

- 2025년 9월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출범에 따른 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가야고분군 보유 시·군(7) 및 광역지자체(3)의 운영비 지원 협의에 따라 재정지원 필요
- 물가상승률 대비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의 분담금 증액 예상

**다. 재원조달방안: 2026년 당초예산 확보(도비 30% 군비 70%)**

(단위: 천 원)

구 분	1차 연도 (2026년)	2차 연도 (2027년)	3차 연도 (2028년)	4차 연도 (2029년)	5차 연도 (2030년)	합계
재월 조달	자체재원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850,000

**작성자: 문화예술과장 최다원**

**참고**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**□ 지방재정법**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**□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**

제5조(사업위탁) 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세계유산의 통합보존·관리·활용·추가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비 등 지원)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